### 가.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발급처 및 비용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 사망신고 및 사후행정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에는 고인의 인적 정보,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등을 기록합니다.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한 시체를 살펴서, 사인을 의학적으로 검증하여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시체검안서는 사망진단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망신고 및 사후행정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 병원, 요양병원, 호스피스에서 사망한 경우 해당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이 아닌 요양원, <u>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u> 하여 사인을 검안받고,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병원이 아닌 곳에서 퇴원 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사망진 단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은 최소 5,000원 ~ 최대 100,000원으로 발급기관마다 상이합니다. 야간과 주말의 경우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임종이 임박하였다면 미리 해당 기관에 비용과 발급 시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합니다.
- -고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한지 발급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장례식장 및 화장장, 각종 사후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7부이상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_\_\_\_\_\_

나. 장례식 준비하기 1탄, 사망진단서 발급 받는 법 요즘은 장례식을 준비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적다 보니, 누가 가르쳐 주는 분들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장례식을 치뤄야 할 때 막막하기만 한데요. 미리 준비도 할 겸 장례식 준비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나이 가 들수록 준비를 해야 하지만 아직까진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미리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해보시시 바랍니다. 임종 전에 미리 장례준비를 하는 것은 불효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장례식 준비하기 1탄으로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사망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와 매장, 화장 신고 등을 할때 사용이 됩 니다. 장례식장 등을 이용하려면 사망진단서등을 제출해야 합니 다. 장례식장, 화장, 매장, 사망신고, 보험, 연금 등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필요하므로, 10부 이상을 준비해 두시는게 좋습니 다.

사망진단서 내용 중 사망의 종류에서 ① 병사,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 이상 세항목이 있는데, ① 병사인 경우에는 장례를 진행하여도 되지만, ② 외인사, ③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검시필증을 교부받아 사망진단서에 첨부하여 장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 2.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도 됩니다. 추후 사망 확인을 의사에게 **시체검안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자연사나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증명서(인후증명서)로 사망진단서를 대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지 통장 포함 2인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3) 3.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임종 장소가 병원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줍니 다. 즉,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시체검안서,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는 사망진단서로 장례식 절차를 진행합니다.

### 4) 4. 사망진단서 발급방법

- 1.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은 처음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의 원** 무과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 2. 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의 **신분증**과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첨부**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무료로 발급 받는 방법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무료로 발급 받기 (작성방법 및 선청서 양식 등)
- 3. 사망진단서 등 병원 진료기록의 보존기간은 법적으로 3년입니다. 3년 이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망 이후 사망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망진단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https://0muwon.com/entry/장례식-준비하기-1 탄-사망진단서-발급-받는-법[공무원닷컴:티스토리]

-----

가족 장례전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과 시기 재발급 받는방법 신뢰의상조 3일의약속 후불제상조 3일의약속 • 2021. 1. 20. 8:00 URL 복사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가족 장례전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과 시기 재발급 받는방법 신뢰의상조 3일의약속 후불제상조

고인이 임종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망진단서 발급입니다. 장례식장과 화장장 등 모든 장례절차에서 고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되고 장례 이후 사후 절차에도 필수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장례식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인 만큼 사망진단서 발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급방법에 대해 신뢰의상조 3일의약속 후불제상조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방법

### - 사망진단서 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중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작성하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최종 진찰 후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해당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받 을 수 있습니다.
- **8원이 아닌 다른곳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 사인을 검안 받은 뒤 **사체검안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을 한 경우에도 퇴원후 48시간 이내 동일한 사인으로 사망 한 경우에 는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 3240よう

### 사망진단서 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중에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작성하는 서류로 사망 사유와 검안결과를 적은 진단서의 일종입니다.

동폭변호		-		1	AL D	당 진	TL	LI			원본대조필	
연변호					,1 0	3 T		^1				
환자성명	-			주민등#	E HA PA			The second	out that	( )		
실제생년월일				-	변호			8	정발 칙업	-	연령	
주 소									- CON CO.		-	
발명일시										124	서각제에 의함)	
사망일시										-	시각제이 의함)	
	주	소	인천 부평구 동수로56									
소용당사	a	소	○수박   ○도로   ○병원	<ul><li>● 의료?</li><li>○ 상업 ·</li><li>이송 중 사망</li></ul>		(상점,호텔)					(교, 운동장등) (,양식장등)	
사망의원인	(가) 직접사인							-,37				
	(나) (기)의 원인									말병부터		
	(CI)	(1)9	원인	- 사망까지 의 기간								
*(나),(다),(라)에 는 (가)와 직접 의	(원)	(되) (의)의 용인										
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	(가)투	(가)부터(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습니다.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68年9	일사의 주	요소견									
시망의 종류	•	범사	O 외인	AF ODIE	및 불상			-				
의인사 사항	사고종류		○ 운수(교통) ○ 중목 ○ 추락 ○ 역사 의도성 ○ 비의도적 사. ○ 화재 ○ 기타( ) 여부 ○ 타살						○ 자설 ○미살			
	사고발생일시			an soul	-	ALB				(2	4시각제에 의항)	
	사고발생 장소 장소			○ 수택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야원등)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등)     ○ 도로       ○ 삼업 - 서비스시설(상품, 호텔등)     ○ 산업장       ○ 농장(논반, 혹사, 양식장등)     ○ 기타(     )								
의료법, 제 발 행	17조 및	같은 법 임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리	나위와 같이	진단(검안)	265 265		56			
의료기	관	명 가	톨릭	대학교	인경	현 성 모	1	건성	7			
÷		소 인천	보 부평구	동수로56			問紀		2			
의사,지과의사			하 번	2								
• 주의 : 사양신고는 다.	1개월	OLTHON	관할 구점	· 시청 · 읍 ·	면・동사두	소에 신고하	10101 810	H, 지면신	고및1	미신고사고	(대도가 <b>무</b> 보실다	

- \*「사무관리규
- 본 증명서는 f

	사 체 검 안	人 多種は主題 む						
경목번호: 연 번 호:								
성 명 실제생년월일	성별 주민등 작 업	목번호 전화번호						
본 적								
주 소 발병일시 사망일시		□불명 이전추정						
사망장소	주 소 장 소							
사망의 종류								
사망의 원인 =(나)(다)에는 (가)와 작정 의학 적 인과 관계가 당확한 것만을 기업한다.	(가)직접사인 (나)중간선행사인 (다)선행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 의 기간						
	11 1과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수술의 주요소건	수술년월일						
	해부의 주요소건							
	사고발생일시							
외인 사의	사고종류							
추가사항	사고발생 <u>주 소</u> 장소 및 상황 상황 상황							
위와 같	이 검안함							
_, _ 기 ( 전화및FAX 면허번호	:							
※주의: 사망선	고는 1개월 이내에 관합구형,시청,쯤,만,동사무소에 신	प्रवासम्बद्धाः						

사망진단서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최종 진찰 후 48 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망한 경우 48 시간 이내 진찰을 받은 경우 최종 진찰과 동일한 사인으로 사망 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의사로부터 사인을 검안 받은 뒤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는 명칭은 다르지만 용도상 차이는 없습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시 주의사항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는 고인의 부모나 형제 또는 직계가족만 발급 가능 합니다.

고인의 성함,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사망신고 외에도 유가족의 학교, 회사 등에 제출을 위해 열부이상 넉넉하게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한 이후에 발급** 받을수 있는 서류로 사망시점은 그 누구도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전에는 절대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 3といっち

사망진단서를 발급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먼저 고인의 부모, 형제 또는 직계가족만 발급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닐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고 사망진단서 발급 시 신분증과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니 꼭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병원 진료기록의 보존 기간은 법적으로 3년으로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사망진단서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 원무과의 직원이 작성하는 서류이다 보니실수로 인하여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면 고인의 성함,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정확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의 경우 유가족 분들이많이 실수하는 항목으로 고인의 실 거주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를 경우화장장에서 화장을 거부 당할 수 있으니 사망진단서 발급 전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 화장장, 사망신고 외에도 장례 이후 사후 절차와 유가족의 학교, 회사 등 각종 행정 처리에 필요한 서류이고, 최초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 발급 시 추후 재발급의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제출처를 정리한 후 넉넉하게 열 부 이상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는 사망한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사망 시점은 그 누구도 예측 할 수 없기 때문에 생전에는 절대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고인이 위독하여 48 시간 이내 임종할 것 같아도 이 역시 추측이기 때문에 절대 사전에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

# 최소 5천원에서 최대 10만원 평균 발급 비용은 약 18,000원

## 3240年今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은 병원에 따라 최소 5천 원 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전체 평균 약 18,000원 정도입니다.

야간과 주말에는 발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임종이 임박하면 사전에 해당 병원의 원무과에 비용과 발급 가능한 시간을 미리 확인하는 걸 권장 드립니다.

## 사망진단서 사망의 종류

### 사망진단서에 표기되는 사망의 종류는?

병사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외인사 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사고사) 기타 및 불상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병사인 경우에는 바로 장례진행이 가능하지만 외인사와 기타 및 불상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의 검시필증이 발급 되어야 경찰로부터 고인의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 3240字字

사망진단서에 표기되는 사망의 종류는 병사, 외인사, 기타 및 불상으로 나뉩니다. 병사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외인사의 경우 질병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로 보통 사고로 인해 병원이 아닌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 받는 사망 사인입니다. 기타 및 불상의 경우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사인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경찰서

수 신 : 유족 귀하

제 목 : 검시필증

아래 사람은 당서 관내에서 변사한 자인 바, 의 지휘로 검시를 마쳤으므로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여도 무방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비고

경찰서

사법경찰관

외인사와 기타 및 불상의 경우 반드시 관할 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담당 수사관이 검사를 한 뒤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사지휘서 검시필증이 발급 되어야 경찰로부터 고인의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타살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부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례 종료 후에는 부검이 불가하니 꼭 사전에 요청해야 합니다. 검사지휘서 검시필증은 검찰청을 경유해 접수 후 일정 시간이 소요되니 이점 유의하여 장례 일정을 설계하면 됩니다.

[출처] 가족 장례전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과 시기 재발급 받는방법 신뢰의상조 3일의약속 후불제상조|**작성자** 3일의약속